



I

정보공개의 이해

- 1 개요
- 2 정보공개 청구
- 3 비공개 대상 정보
- 4 정보부존재 및 민원사무 처리
- 5 정보공개 오남용
- 6 행정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 7 정보공개 관련 협조사항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 시작된다



1 가.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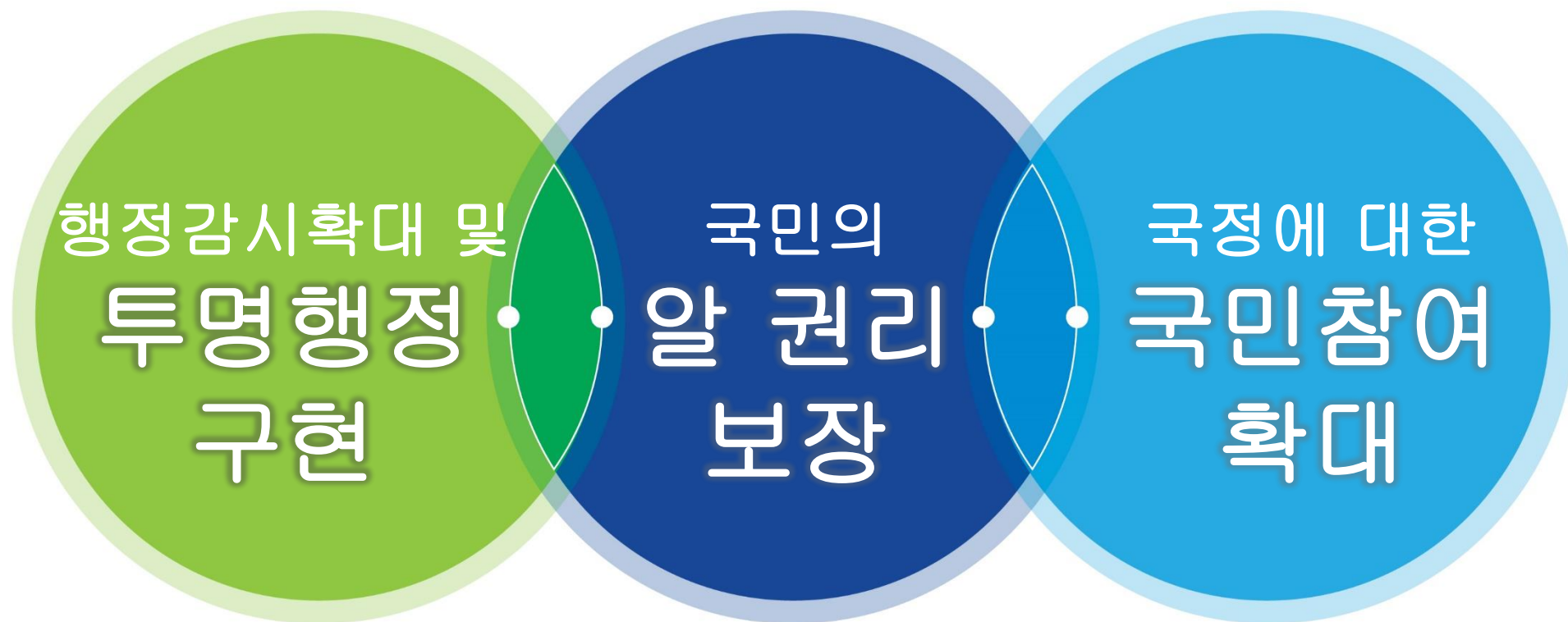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 **시작**된다



1 나.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제도





1 다.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조례제정 (청주시)

● 1992. 0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법률제정

● 1994. 07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세계 13번째, 아시아 첫번째

법률시행(1998.01)

● 2003. 06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정

● 2004.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전면개정)

정보공개시스템도입

● 2006.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 2011.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정보부존재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운영 등

원문공개제도 도입

● 2013. 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원문정보공개제도 도입

원문공개제도 시행

- 중앙행정기관, 시도('14.03)
- 기초자치단체, 교육청('15.03)

- 공기업, 준정부기관('16.03)



1 라.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情報

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 중, 업무상 필요로 이용 보존되는 경우
- ※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의 발간 자료 예외

정보의 존재여부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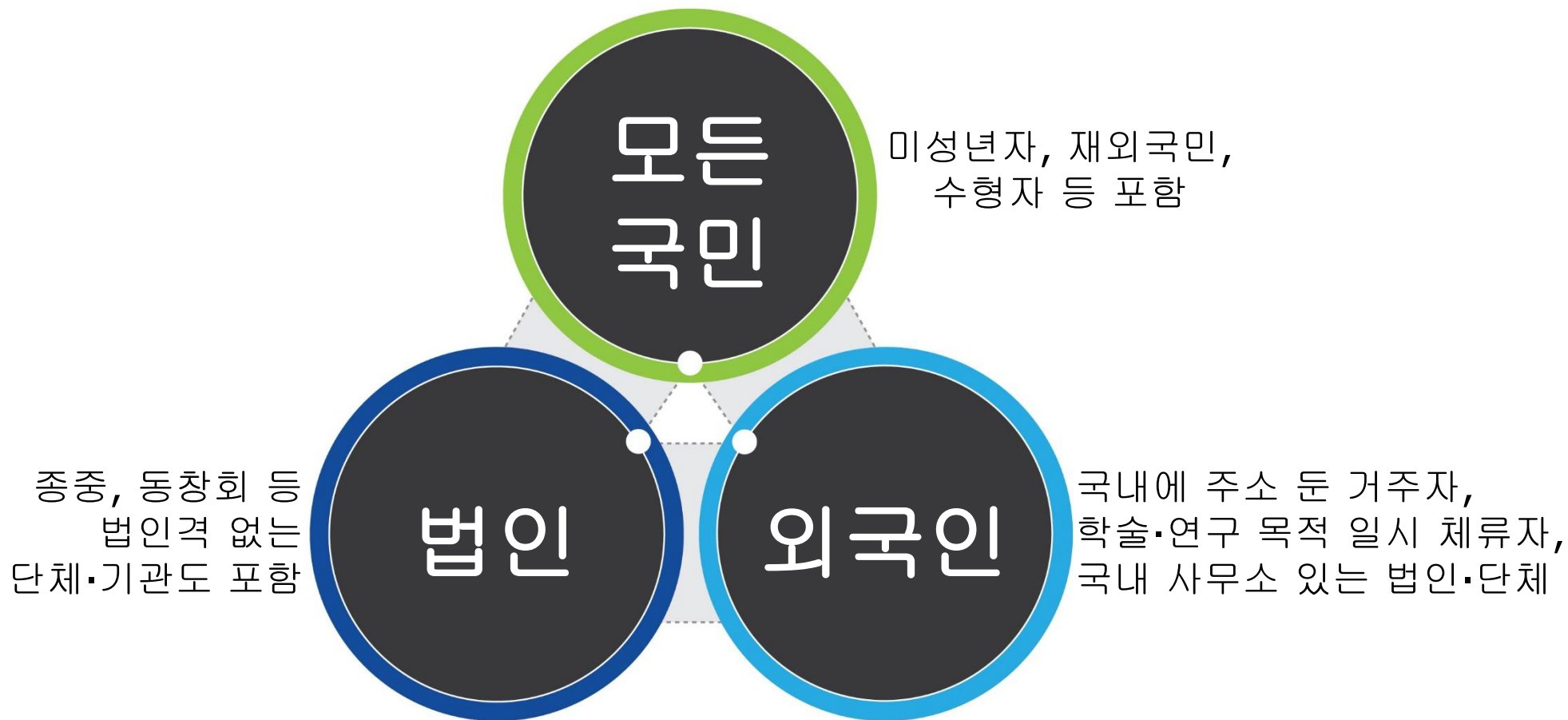
- 청구대상 정보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1 마.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 및 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1 바.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및 대상

정보공개 대상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구 분	대상기관 (예시)
국가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회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장·준시장·기타) ex.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각급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 (사립대학 포함)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 ex. 도시철도, 도시개발, OO시 농수산물공사, 시설·환경·경륜공단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ex. 세종문화회관, OO시 발전연구원 등
특수법인	ex.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은행, 지방문화원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보조기관(연 5천이상)	ex. 장애인 야간학교, 청년회의소 등



1 사.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권자
- 청구방법
- 청구제한

정보공개 결정

- 원칙적 공개
- 결정시 고려사항
 - 처리기한, 제3자 의견청취, 즉시처리 가능여부

비용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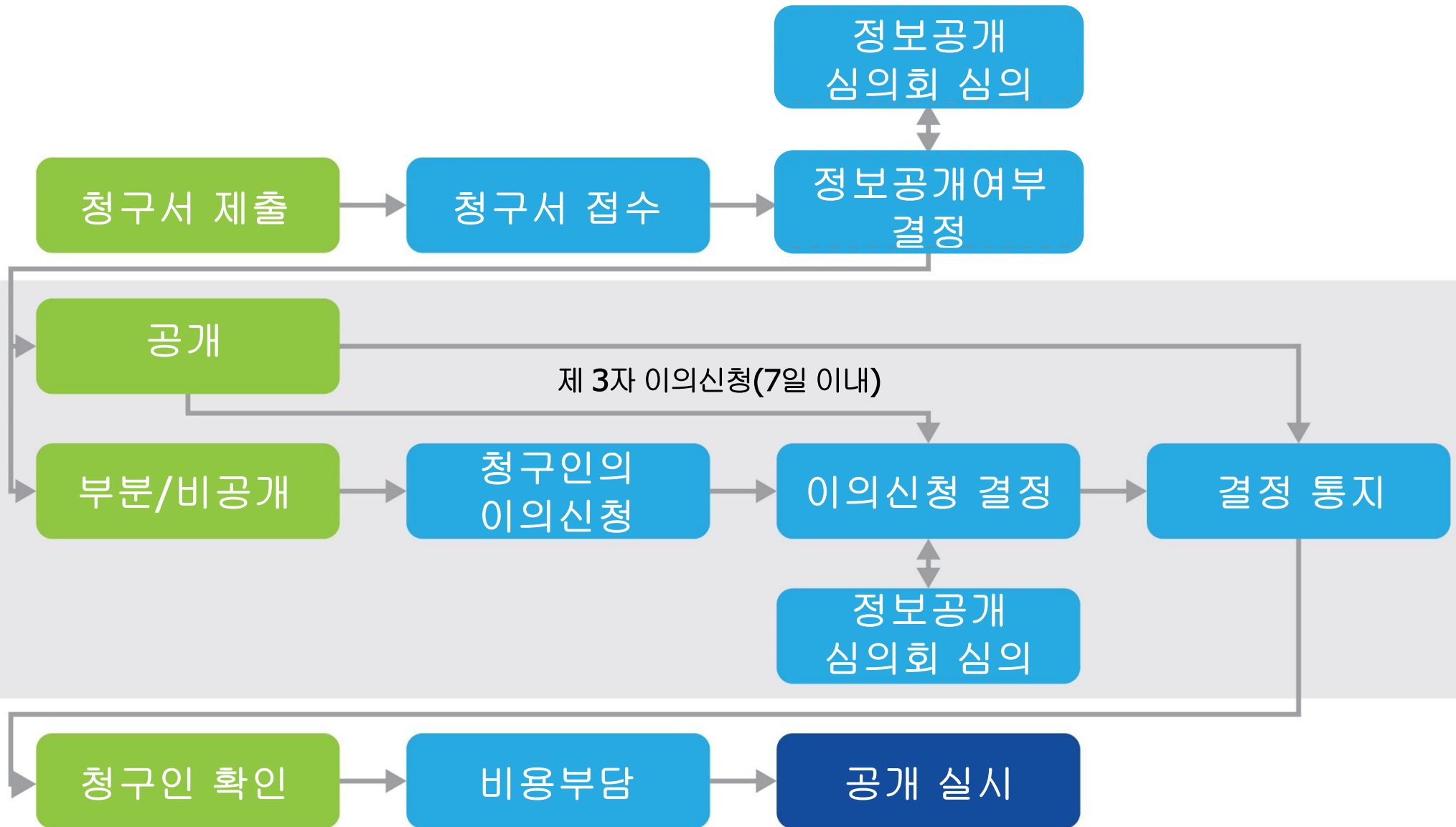
- 수수료 + 우편요금
- 감면 대상 및 사유
- 수수료 납부방법

공개 및 불복

- 공개 방법
 - 청구인의 확인 등
- 불복구제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2 가. 정보공개 처리 절차도





2 나.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 미성년자
- ▶ 재외국민 포함

법인

- ▶ 사법상, 공법상 기관
- ▶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대판 2003두 8050)

외국인

- ▶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자
 - ▶ 국내 사무소 있는 법인·단체
- ※ 제외대상 : 외국인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방법

- ▶ 직접제출, 우편, FAX, 구술
-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청구제한

- ▶ '청구목적'에 따라 청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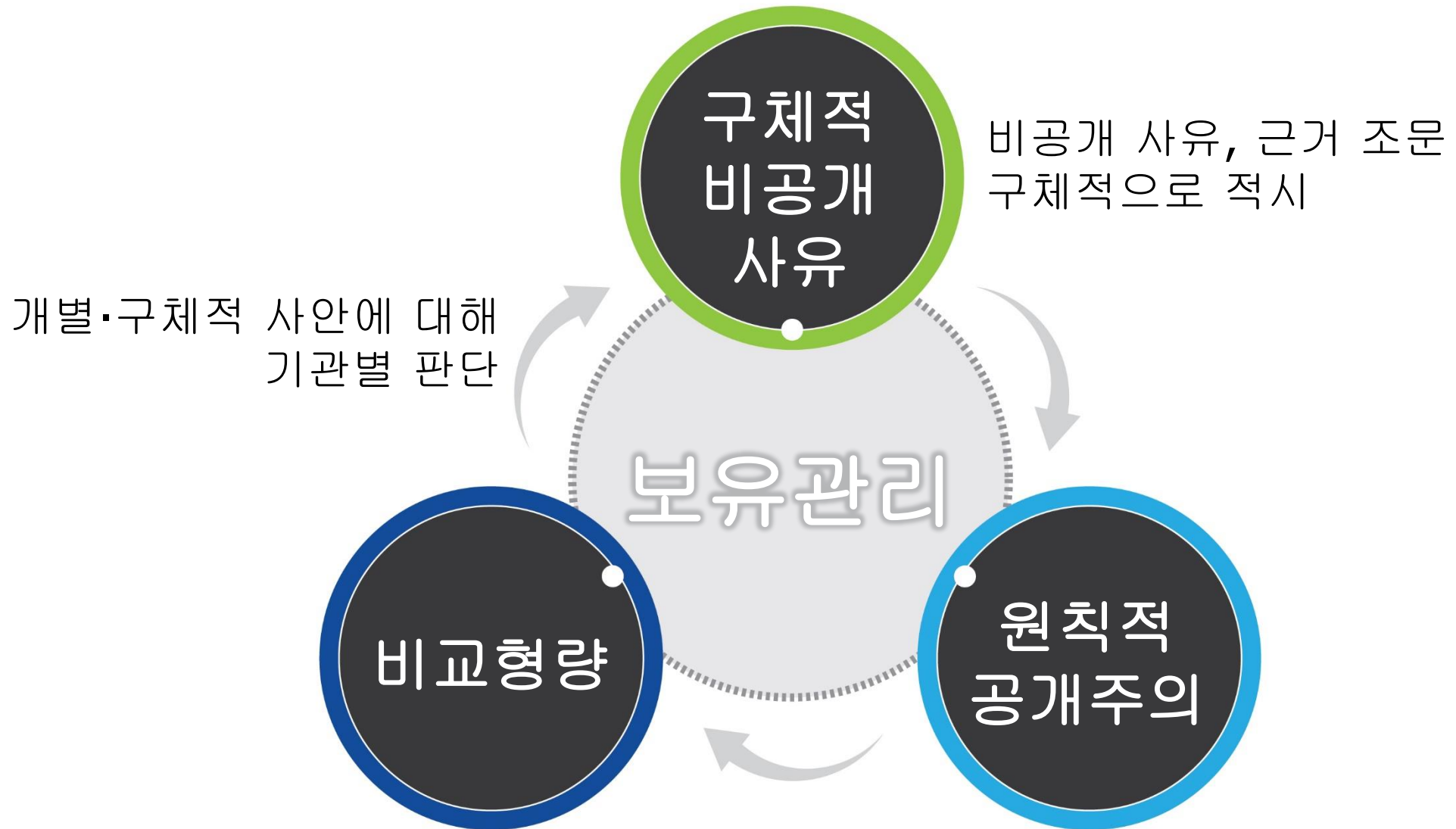
2 다.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2 라.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정보공개 처리시 고려사항

1

처리기한

-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후 10일 이내 범위 내 공개 일시 통지
- ▶ 정보부존재 경우 7일 이내 통지

2

결정기관

-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 홍보자료
- ▶ 결정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제3자 의견청취

제3자 의미

청구정보와 관련 있는 자

청취절차

1. 청구사실 통지
2. 제3자 비공개요청(3일 이내)
3. 제3자 이의신청(7일 이내)
4. 공개결정시 결정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최소 30일 간격

공개결정



공개실시

기속 여부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 하는 것은 아님



2 마. 수수료 부과 및 감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先 비용징수, 後 교부

*비용 = 수수료 + 우편요금

수수료 기준

- '감면할 수 있다'
- 국가기관(시행규칙)
- 자치단체(조례)

수수료

감면 기준

- 1 비영리 학술공익 단체·법인
-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
- 3 공공기관 장의 인정

※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

비용 = 정보의 공개수수료 + 우편요금
(단, 매체비용은 별도)

수입 인지, 증지, 전자지급수단, 현금



2

바. 정보공개결정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공개 결정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 절차

정보의 활용

- ▶ 공개 받은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공개 방법

- ▶ 열람, 사본 등 제공
- ▶ 전자적 정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소재 안내 (행정정보의 공표)

내부 종결

- ▶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경우
- ▶ 부존재 통지를 받은 후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사.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처리

비용납부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30일), 제3자(7일)

정보공개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처리

반복제기, 기간초과, 공개결정, 정보부존재, 민원 처리,
이미 심의회를 거친 경우, 전부인용 할 경우 등은 제외

정보공개
심의회

공개여부의 결정 권한과 의무는 공공기관에 있음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내부적으로 결정



3 가.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정보공개 원칙

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개별문서의 비공개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





3 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제 1호)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 법령에 우선 적용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 명령)만 해당됨(대법원 2003두 8395)

개별법 근거 비공개 사례

- 노동위원회 의결로 노동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발언내용(행정심판법 제41조)

법률 위임 부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대법원 2003두1370)
- ※ 다른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면 안됨



3 다.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제 2호)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방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란 외교관계 등에서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 고려(대법원 2004두 12629)

공개
사례



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 '

-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고려

경찰청 총포분사기 검사 여부

- 단,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미포함

비공개
사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협상과 관련된 정보

- 향후 협상에 상당한 지장과 한미간 외교적 문제 발생가능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의 회의록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대법원 2001두 8254)

'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총리행정심판 2005-01186)



3 라. 국민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제 3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공개
사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서울행법 2008구합 31987)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서울행법 2007구합 6342)

비공개
사례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자료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

총기허가 현황·위탁관리에 관련한 상세한 현황 정보



3 마.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 4호)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공개 사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교장 외 6명에 대한 출장명령부
(공개,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 1536)

비공개 사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헌법재판소 94 헌마 60)

·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3두 12707



3 바.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제 5호)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공개
사례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울행법 2001구 15787)

공사 종료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비공개
사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단, 한시적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대법원 2001두 8827)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중앙행심 2011-2523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대법원 2002두12946)



3 사.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제 6호)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

공개
사례



출장일수 및 출장여비 지급내역(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3445)

사면대상자들의 사면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대법원 2005두241)

임도 건설사업 관련 타당성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 공개(중앙행심 2015-16577)

비공개
사례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정보공개 (대법원2012두25729)

○○광역시장의 특정직무 등과 무관한 불특정 공직자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

개인자격으로 간담회에 참가한 공무원의 인적사항(대법원 2003두8302)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건강상태 등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3 아.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관련(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정당한 이익 보호 대법원 2008두 13101

공개
사례



단체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있는 식당위치, 명칭, 요금, 면담대상자 인천지법 99구 1536
○○공사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대법원 2007두 1798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 국무총리 행정심판 08-22417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단, 영세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여부 확인 필요 대법원 2003두 8302

비공개
사례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향후 유사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유리할 수 있는 낙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사항 (권익위 2014-16193)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자. 투기·매점매석 관련(제 8호)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 방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5131

공개
사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건설교통부 200103898)

•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되어야 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사례



전국 국유림 목록(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변 사유림 매수관련 권리보존 조치에 지장초래,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우려)



4 가.정보부존재(판단기준, 처리방법)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 ① 실제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취합, 가공이 필요한 경우
 - ↳ '보유관리 형태대로 공개'
- ③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 ↳ '실제 폐기여부'
- ④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 '사회일반인의 관점'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 ① 정보부존재청구
 - ↳ 구체적인 부존재 사유를 적어 처리
 - ↳ 처리기한 : 7일
- ② (비)공개 + 정보부존재 청구
 - ↳ 공개(비공개)하고 부존재 사유명시
 - ↳ 처리기한 : 10일



4. 나. 정보부존재(생산·접수, 입증)

생산,접수 판단기준

- 정보목록 및 시스템에 정보 검색 가능
 - ↳ 종이문서 목록까지 포함
- 관련 법령(직제)에 따른 소관업무 여부
 - ↳ 업무분장, 지침, 훈령, 예규 등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되는 시기 도래 여부
※ 매 0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시기 前
청구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
※ OO경찰서가 OO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이
필요(정보부존재)

정보부존재 입증

- 청구정보를 기관이 보유·관리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 입증책임
 - ↳ 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
-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없음을 입증(대법원 2003두12707)



4

다. 정보부존재(취합)

「취합」해야 하는 경우

‘취합’ 판단기준

구분	판단
기관 內	정보 공개
기관 外	정보 부존재



※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취합 아님(정보공개)



4

라. 정보부존재(가공)

가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구분	형태	추출	조합
非 전자	전자적 형태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 (부존재)	건축인허가 (총수별, 회사별)	日별 정보 → 年별 정보
전자	비전자 형태변환 (공개) 프로그램 無(부존재)	프로그램 有 (공개) 프로그램 無 (부존재)	

예시

- ※ 건축인허가 제출 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총수별, 주차장 보유 여부별 통계 추출은 가공
- ※ OO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 소지 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
- ※ OO관련 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 ※ 162장의 OO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 ※ 녹음파일 형태의 OO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



4. 마. 정보부존재(보존연한 경과·폐기)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보존연한경과’ 판단기준

-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 보존연한 내 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폐기’ 판단기준

-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폐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예시

※ 보존연한 내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4

바. 정보부존재(포괄적 청구)

「포괄적 청구」인 경우

「포괄적 청구」 판단기준

- 청구기간·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 'OO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 다수 규정·업무 등에 걸쳐있는지 여부
 -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양이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부
 - ↳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시사항

「포괄적 청구」 처리방법

- 민원처리법 제 22조에 따라 보완 요청
-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4 사. 민원사무 처리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

법제처 해석례 10-0055



민원사무
처리대상

처리기한: 7일

질의, 진정, 건의성 민원을 정보공개로 청구한 경우 민원사무로
처리



처리절차

처리절차 I

STEP1

시스템상
민원사무 처리

STEP2

내부 검토

STEP3

내부결재 후
자체 처리

처리절차 II

STEP4

청구방법에 따라
통지

정보통신망 ▶ 시스템통지

오프라인 ▶ 문서통지



5

가. 정보공개 오남용 처리

「신의·성실의 원칙」

청구량 과다

‘오로지 괴롭힐 목적’
(대법원 2004두2783)

청구목적 제한이 없음
협의를 통한 청구량 조정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 하다고
하여 청구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서울행법 2007.10.9.
2007 구합6342)

공개정보량 과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선 열람, 후 교부

포괄적 청구

‘사회 일반인의 관점’
(대법 2000두 9212)

구체적으로 ‘보완’요청
‘정보부존재’ 통지



5 나. 동일 반복적 청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시행령 제6조 제5항)

판단 기준

'동일한'의 의미?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지, 종전 민원과 내용 유사성, 동일 답변 가능한 경우 등 종합적으로 고려 (법제처 11-0134)

- ※ 변동사항이 없는 식품제조업체·숙박시설 등 특정지역의 동일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
- ※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의 인쇄비, 신고 포상금 등 예산 집행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

예외 사항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위법·부당의 객관적 증명, 법률관계의 변동 등 청구인 귀책사유 부재

처리 방법

기관장 판단으로 자체종결 가능

정보공개 여부(부존재 포함) 결정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청구

-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 하지 않고 공개사항은 공개 처리해야 함



6

가. 행정정보(사전정보) 공표

「사전적·적극적 공개」

행정정보 공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 공표 대상 범위

- 국민 관심 정보
- 대규모 예산 사업
-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 기타 지자체가 정한 정보

공표 목록

629개 목록
(전라남도)

◆ 주요 공표 목록

- 업무추진비 내역
- 단체장 일정
- 해외출장 현황
- 미세먼지 등

공개 위치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매월(분기, 반기, 수시)
최신자료 게재



6

나. 전라남도 사전정보 공표

국가상징
알아보기

인기 5 관광

통합검색 ☐ 통합검색어를 입력하세요!남도
여행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전자민원

분야별 정보

전남소개

전체메뉴보기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분야별)

인쇄하기

SNS퍼가기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분야별) >

사전정보공표(열람용)

사전정보공표(즐거찾기)

정보공개 고객센터

정보공개 >

주요시책 >

공공데이터 개방 >

재정운영 >

HOME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분야별)

ALL

전체



감사/총무/자치행정/교육



기획/재정/세무/정보화



재난/안전/소방



경제/산업/일자리



문화/관광/체육



가족/복지/보건/위생



농축산/수산물/식품



건설/교통/하천



도시/주택/토지



환경/상하수도/산림



의회

구분

☒ 공표목록 ☐ 공표항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정렬순서

☐ 공표목록 ☐ 공표주기 ☐ 공표시기



6 다.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 공개

- (정보목록)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문서제목)은 결재한 다음날 조회 가능
- (원문정보) 기관에서 생산한 실/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결재한 날로부터 7일 후 열람 가능
- 일반 국민은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를 통해 정보목록, 원문 열람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
정보목록 조회	전자결재시스템 ① 정보목록추출 (당일 생산·변경 문서) 공공기관 문서생산 ② 목록파일연계 (일배치) 정보공개시스템 ③ 정보목록 DB (원문대상목록 분류) 목록조회 서비스 (정보목록 및 원문목록) ④ 국민	① (전자결재시스템) 생산문서의 정보목록 추출 ② 추출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 ③ (정보공개시스템) 전송 받은 정보목록으로 정보 목록 DB 구성 후 기관에서 등록한 원문 대상직위를 참고하여 원문목록 DB 구성 ④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및 원문목록 조회
원문정보 열람	전자결재시스템 ② 원문 추출 공공기관 원문 전송 ③ 원문정보연계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 ① 원문요청 (원문대상목록 분류) 원문제공 (개인정보 필터링) ④ 국민 원문공개	① (정보공개시스템) 국민이 원문정보 열람 요청 ② (전자결재시스템) 요청한 원문정보를 추출 ③ 추출한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 ④ (정보공개시스템) 전송 받은 원문정보에서 개인 정보 포함여부를 필터링 후 원문정보 열람 제공 ☞ 개인정보 포함 시 원문정보 열람 불가



6

라.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의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서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

■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방식의 변화 ■

- 문서의 공개 분류와 정보공개 결정이 한 번의 결재로 처리된다.
- 공개 분류된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 공개된 문서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다.

⇒ 모든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

▣ 공개/비공개 분류 시 고려사항

-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정함
- 비공개로 분류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비공개 시 청구인은 불복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6 마.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

여수광역시

문서 번호	제출일자	주무관	심사관	검토관	의결소장	부서장	시 장
2017. 3.	2017. 3.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문서 제출 일자	2017. 3.						
문서 제출 일자	2017. 3.						

2017. 3.

- 1사군 1날도 음식거리 조성 -

2017년 『음식특화거리』 조성 방안 검토 보고

주요내용

개요

여수시 (식문화생태)

- 1사군 1날도 음식거리 조성 -

『음식특화거리』 조성 방안 검토 보고

요하는 음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의 음식관광 인프라를 확충·구축함으로써 관광과
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고자 함.

요하는 음식 밀집지역을 날도음식거리 공모 추진
요하는 확대·구축하여 관광에 1,800명 음식

의 지원 현황

날도 음식거리 5개소(2016년 지정) - 과도 파로불림

일 선정대상

의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의 거리 조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
의 거리가 100m이상 또는 거리 면적이 2,000㎡이상 되고 거리를
요하는 음식점이 5개소 이상

내용물 : 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케팅서비스, 홍보 지원 등

장 제 획

대상 거리 선정 절차

대상 : 4개소

수명 음식거리 - 교동 정어탕거리 / 불산동 계장거리 /
의 - 문수 문화거리 / 연남 골장면거리

의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17. 5월 중
의 및 관광 전문가 7 - 8명으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자문단
설 사업 계획 제출

개선방향)

👉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본문 일체를 스캔. 첨부



바.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

○ 표지(제목)만 공개, 내용(첨부파일) 비공개

[illegible]

개선방향)

**본문 내용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비공개정보는 첨부로 함)**



6

사.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 전라남도 원문정보 공개율('19.7월말 현재) : 77.4%(전국 3위)

- (시도 현황) ① 서울 96.5 ② 충남 85.8 ③ 전남 77.4 ④ 대전 76.5 ⑤ 제주 72.5

-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 전 실과, 직사업소 대상 '생산문서 재분류' 실시

관리정보 수정

관리정보 ☐ 문서보안

제목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가위원 추천 ☐ 긴급		
생산등록번호	도민행복소통실-3905 (2019.03.12)	열람범위	기관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비공개 부문공개	열람제한기간	설정안함
비공개근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비공개사유	개인정보 포함		
공개일자	※ 설정한 공개일자부터 대국민 공개로 전환됩니다.		
불입공개여부			
불입			
변경사유			
사유	재분류 (2019.4.15.)		



7

정보공개 관련 협조사항

①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바로톡(barotalk)’ 설치

- (바로톡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 모바일 메신저로서 공무원들이 외근, 출장 등 이동시에 실시간으로 업무관련 대화 및 자료들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설치방법) 시도행정 공지사항 참고(‘바로톡’으로 검색)

② 정보공개 처리기간 준수

-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통지
- ★ 전라남도는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7일 이내 처리 권고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통지

③ 비공개 문서 생산 자제

- 본문에는 공개 가능한 내용만 수록, 비공개 내용은 첨부파일로 ‘부분공개’ 처리
- 서식기안문을 사용할 경우 표지에 주요내용 요약 작성, 비공개 내용은 첨부파일
- 분기별 생산문서 재분류 실시('19. 9월 실시 예정)



Q & A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 시작된다